불법구금이 감형을 받을 수 있게 하는지 여부[1)]

1. 사건개요

2015년 1월 14일 제네바 주 경죄법원은 돈세탁 혐의로 기소된 X(청구인)에게 판결이 나기 전까지 구금되었던 1,022일을 제외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15년 8월 3일, 청구인은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판결 전 구금일수를 제외한 제1심 결정에 대한 X의 항소를 기각했다. X는 2013년 3월 25일에서 2015년 6월 15일 사이에 불법적인 조건 하에서 534일 동안 구금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고, 2016년 9월 13일 연방대법원은 X가 제기한 항소심을 부분적으로 인용하여 사건의 결과를 판단하기 위하여 환송했다.

2016년 11월 11일 연방대법원의 환송에 대해 항소법원은 X에게 부과된 7년의 징역 중 6개월을 단축하여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X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4년형의 선고를 해줄 것을 요구하며 상고했다.

2. 결정요지

(1) 청구인은 이 사건 불법적인 구금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6개월이라는 형량 감축이 지나치게 짧고 자의적이라고 주장했다.

(2) 판례에 따르면, 통상적인 혹은 헌법적인 보장에 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인해 구금과 관련된 절차가 위반되는 경우에 판결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은 특히 구금판사(juge de la détention)[2)] 앞에서 불법적인 임시구금이 주장될 때 적용된다. 그러나 불법적인 구금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수감자가 석방되지는 않는다. 결국 확인된

1) 6B_1395/2016, Arrêt du 27 octobre 2017.
2) 우리나라로 치면 영장전담판사라고 할 수 있다.

위반의 결과를 고려하는 것은 판사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다.[3] 배상의 범위는 특별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특히,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에 달려있다. 한편 부당한 구금의 결과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의 범위는 수감자가 요청하고 피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조건에서 보낸 일수에 비례한 형량의 감축은 유럽인권협약 제3조[4] 위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제책이 될 수 있다.[5] 즉 불법적인 조건에서 보낸 구금일수는 수감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6] 형의 감경은 유럽인권협약 제3조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명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피고인의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측정 가능해야 한다.

청구인은 2013년 3월 25일부터 2015년 6월 15일 사이에 534일 동안 계속해서 3.39m^2 면적의 작은 방에 있었다. 2013년 3월 27일부터는 계단청소 업무의 일환으로 하루에 한 번 4시 30분에 나갈 수 있었다.[7]

(5) 주 법원은 유럽인권협약 제3조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형량 감량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감형의 정도에 관하여, 주 법원은 첫째, 신속성 원칙(principe de célérité)[8]을 위반한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을 유추 적용하여 불

---

3) [형사소송법 제431조(불법구금조치)]
   1. 피고인에 대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구금조치가 취해지면, 형사 당국은 피고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2. 임시구금 및 안정상의 이유로 구금하는 경우, 피고인은 구금이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고 과도한 자유 박탈이 형량을 줄임으로써 손해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
4) 제3조(고문의 금지) 어느 누구도 고문,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이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5) Arrêts CourEDH Stella et autres contre Italie du 16 septembre 2014, §58-60; Shishanov contre République de Moldova du 15 septembre 2015, §136; Neshkov et autres contre Bulgarie du 27 janvier 2015, §287.
6) Arrêts CourEDH Neshkov et autres contre Bulgarie précité, §299; Ananyev et autres contre Russie du 10 janvier 2012, §172.
7) 24시간 내내 구금되어 있지 않았다.
8) '신속성 원칙'은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에서 비롯된다. 즉 합리적인 기간 내에 판결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유럽인권협약 제6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구금일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구제책을 찾는 방법과 둘째, 부당한 구금의 경우 이러한 불법구금 기간을 고려하여 보상을 수량화하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음을 제시했다(형사소송법 제429조). 해당 사건에서 불법구금으로 수감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주 법원은 형량을 감축하는 두 번째 방법을 택하여 계산을 했다. 형량 감축은 불법구금 3일에 대하여 1일의 보상으로 이루어졌고, 불법구금 된 534일을 3으로 나누면 178일, 즉 5개월 26일이므로, 주 법원은 6개월의 감형을 결정했다.[9)]

(6) 청구인은 3.39m^2 면적의 공간에서 특별한 고통을 겪지 않았고 24시간 내내 교도소에만 있지 않았으며, 이러한 점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 명백하게 고려되었다.

(7) 이러한 상황에서 주 법원이 불법구금을 당하였던 청구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형의 6개월을 감형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비판받을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한다.

---

1. 모든 사람은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 또는 형사상의 죄의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한 내에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판결은 공개적으로 선고되며, 다만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미성년자의 이익이나 당사자들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엄격히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보도기관 또는 공중에 대하여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아니 할 수 있다.
[…]

9) 주 법원이 내린 다른 사건에서는 591일 동안 이어져온 불법구금에 대해서 7개월 형량 감축을 한 사례도 있다. (591/3=197일)